

인천지방법원 2023. 4. 12 선고 2022가단25970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인천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근배

피 고 1. A

2. B

변 론 종 결 2023. 3. 22.

판 결 선 고 2023. 4. 12.

주 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0,581,007원 및 그 중 20,096,986원에 대하여 2022. 8. 13.부터 2022. 12. 6.까지 연 7%,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들이 2021. 12. 22.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피고 A에게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2022. 2. 11. 접수 제285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와 사이에 2020. 4. 10. 피고 A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용보증원금 20,000,000원, 보증기한 2022. 4. 8.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피고 A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의 신용보증 하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아니하거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가 중소기업은행에 보증 채무를 이행하게 되면,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해지되지 아니한 신용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의 추가 보증료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A는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해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2020. 4. 10. 2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2022. 5. 3. 피고 A가 위 대출원금을 연체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22. 7. 20. 중소기업은행에 20,096,98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원고는 이후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313,280원을 지출하였고, 추가 보증료 78,280원이 발생하였다. 한편 보증채무의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위 대위변제일로부터 현재까지 연 7%이다.

마. 피고 A는 2021. 12. 22. 자신의 아들인 피고 B와 사이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2022. 2. 11. 접수 제285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구상금 20,581,007원(대위변제금 20,096,986원, 대위변제일인 2022. 7. 20.부터 2022. 8. 12.까지의 지연손해금 92,501원, 가지급금 313,280원, 추가보증료 78,24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20,096,986원에 대하여 2022. 8. 1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2. 12. 6.까지 약정 손해금율인 연 7%,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피보전채권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에는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아직 구체적으로 발생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그보다 앞선 2020. 4. 10. 이미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피보전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있었고, 피고들이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로부터 5달도 되지 않은 2022. 5. 3. 피고 A가 위 대출계약의 원금을 연체하였으며, 실제로 원고가 2022. 7. 20. 피고 A의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피고 A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피고 A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사해행위의 주관적인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2606, 2613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토지를 피고 B에게 증여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법률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B과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피고 A에 대한 대여금 20,000,000원의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피고 A의 다른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의 악의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 B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 B은 피고 A에게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김수영

별지